

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
【교통행정과】

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536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2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교통행정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교통안전법시행령」 제8조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6년 12월 23일 ~ 2017년 1월 11일(20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관련협의 : 해당 없음
- 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 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

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” 를 “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교통행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교통행정과장 윤영균
	팀장 직위·성명	교통시설팀장 임국남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임국남 (790-5480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 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u></p> <p>1. ~ 2 (생략)</p> <p>3. <u>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</u> 시의원</p> <p>4. ~ 6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 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</u> 시의원</p> <p>4. ~ 6 (현행과 같음)</p>

《 관계법령 발췌서 》

【교통안전법시행령】

- 제8조(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“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11.8.19, 2012.9.7>
- ② 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7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 <개정 2010.1.7, 2012.9.7>